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51호(2021) 관련)

2022. 1. 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월 5일(수) 10:00~16:0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1호~제2호 및 제251호(2021년), 제252호(2021년)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51호(2021) 『(주)○○○○ 및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피조치자 A의 법률대리인임. 기존에 진술한 바와 같이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든가, 시세조종행위를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 (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종목 모두 A씨의 호가관여율이 거의 5%를 넘어가고 있고, 매수주문비율과 매수체결비율도 거의 10%에 달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한 개인이 특정한 종목에 대한 주문의 비중이 10%, 호가관여율이 5%에 달하는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 (진술인) 한 종목에 제가 집중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음.

○ (위원) 기본적으로 A 진술인의 경우에는 시세조종 관련으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셨는데, (주)◆◆◆◆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주)◇◇◇◇(현 (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 (진술인) (주)◇◇◇◇와 (주)□□□□는 좋아서 샀던 것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음. (주)◆◆◆◆도 마찬가지였음. 제가 순수하게 회사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주식을 사고팔

있던 것 외에는 없음.

○ (위원) 일반적으로 A씨의 매매형태(pattern)가 장마감 직전에 매매하는 형태(pattern)를 가지는지?

▶ (진술인) 제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남. 마지막 종가에도 일부 샀을 수는 있음. 그런데 제가 주식을 종가에 샀다, 그런데 그것이 시종가 관여라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나 생각함.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B의 법률대리인임. 범죄혐의는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고, 직접증거가 아니면 간접증거 또는 정황으로 입증해야 함. 그런데 본 건의 경우 미공개정보전달에 관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임. 간접증거나 정황도 전혀 없음.

○ (위원) 본인은 진행기준 매출 인식 이견으로 인해서 의견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 못했다고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논거로 회계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견거절이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이 나온 경우(case)들을 보면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나 횡령 등 큰 이슈 사항들이 주로 쟁점을 이루음. 그때 당시 (주)◇◇◇◇◇의 회계처리정책은 제1115호 수익인식기준을 최초 도입한 사례(case)였고, 단순히 회사에서 부정이나 횡령 같은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서 도입 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로 귀결되었다고 생각을 했음. 과거 제 경험상이나 사례(case)에서 그 회계정책 가지고 '의견거절' 나온 것이 없었고, 단순히 회계 이슈로만 치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음.

○ (위원) C씨가 (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B씨는 인지하고 계셨는지?

▶ (진술인) 몰랐음.

○ (위원) 혹시나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셨는지?

▶ (진술인) 전혀 못했음. 사실 그때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음.

○ (위원) 3월14일 이전에 두 분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돈을 빌리고 받는 그런 것은 굉장히 친한 사이에서나 자금에 대한 차입이 가능한 것 아닌지?

▶ (진술인) 기본적으로 친한 관계로 같이 근무를 했었으니까

관계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하지만 그때 사이가 소원해졌던 것인데, 그래도 제가 돈 얘기를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기에는 모호해서 C씨한테 부탁을 한 것임.

- (위원) 친한 사이가 아니면 사인관계에서 8~9,000만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음.
- ▶ (진술인) 과거 C씨가 전세를 들어갔을 때도 제 개인자금을, 계약금이 좀 안 맞아서 제가 그 정도의 금액을 빌려준 적이 있음. 기본적으로 알고 지낸 것이 10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신뢰관계는 확실히 있는 사이임.
- (위원) 미공개중요정보가 3월14일에 생성이 되었느냐, 지금 진술인에게서도 단순히 공문이 왔다, 그 공문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절차 미이행에 대한 공문인지?
- ▶ (진술인) 그동안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출 요구한 것임.
- (위원) 수익인식기준이 바뀌면서 자료준비가 하루 이틀만에 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정보생성시점으로 보는 가장 큰 근거라고 금감원은 주장하고 있음. 실제로 회사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제공해서 한두 달에 걸쳐서 이 작업을 완수하였음. 그런데 진술인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 ▶ (진술인) 그러함. 제가 회계감사는 전혀 담당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회계를 담당했던 담당임원이 회계법인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음.
- (위원) 공문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 ▶ (진술인) 감사가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았고 너희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후속조치(follow up)하지 않으면 감사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음.
- (위원) C씨뿐만 아니라 몇몇 회계사와 통화를 하셨는데 그것이 3월14일인지?
 - ▶ (진술인) 3월14일 아니면 3월15일로 기억이 되는데, 공문을 받고서 이런 사례(case)가 있는지 내용을 알아봐 주겠냐고 주변지인들한테 연락을 한 것임.
- (위원) 오전에 △△회계법인을 방문해서 2차 수정재무제표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정재무제표가 감사인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전달한 것인지?
 - ▶ (진술인) 맞음.
- (위원) △△회계법인의 반응은 어땠는지?

- ▶ (진술인) 처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음.
- (위원) 3월14일, 15일 이후에는 C씨와 특별히 접촉했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그럴 시간도 없었음.
- (위원) 공문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회계기준 위반 소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자산부채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절차 수행이 가능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의 내용을 보시고 회계사로 근무하신 분의 입장에서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닌지?
- ▶ (진술인) 제가 회계법인에 오래 있었던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익인식기준 자체가 틀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부채부터 전부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용적인 문구라고 일단 생각을 했음. 또 하나는 그런 내용 자체가 감사준칙이나 감사기준상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은 예전에 ○○○○○○ 때 한 번 봤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음. 그냥 겁주려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음.
- (위원) 공문과 같은 ‘적절한 감사절차 미수행’을 받았을 때 추후 ‘비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2019년 당시와 회계개

혁 직후의 상황이 아닌 평상시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

- ▶ (진술인) 2019년 이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는 제가 현직을 떠나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2019년 이전에는 이러한 공문을 거의 잘 보내지도 않았고, 만약 보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약간 독려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그러면 그러한 독려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열심히 했어야 되었을 것 같은데 무엇을 열심히 하셨는지?
- ▶ (진술인) 일단, 거기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다 후속 조치(Follow up)를 했음.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T/F를 만들어서 거래처를 대응하는 임원들은 거래처로부터 추가증빙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것이 2018년도 감사였지만 사업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증빙과 회계상 개요 등을 다 맞추려는 노력들을 전부다 했음.
-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2018년이 되었든 2017년이 되었든 회계정책 이슈와 관련된 감사절차 시정 제출 건에 대해서 의견거절이 표명된 사례가 있는지?

- (보고자) 2019년 의견거절 상장 법인은 총 58사(社)이고, 감사법인제한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은 62사(社)이고 이 중에서 수익인식 관련 사항이 포함된 상장법인은 4사(社)임.
- (위원) 2019년 것을 알려면 2018년 이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본 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 (보고자)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변경 현황 31사(社)에 대해서 감사의견 거절 사유와 한정사유, 그리고 재감사시 어떻게 감사의견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음. 그중 수익인식기준 관련되어 4사(社)가 있었음. 4사(社)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등 허위공문 송부가 있었던 것까지 확인을 했음. 31사(社)의 의견거절 사유와 한정의 사유는 개별적인 것으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특정한 사유로 다 공시되어 있음.
- (위원) 그러니까 31사(社) 모두 다 회계정책에 대한 이슈와 관련된 감사자료 시정 제출 요구였는지?
- (보고자) 어떤 회계정책이 변경되어서 또는 회계정책이 잘못 적용되어 의견거절이라든지, 한정 의견이 있다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웠음. 개별적인 회계처리 건, 구체적인 건을 가지고 거의 다 의견거절이나 한정으로 확인되었음.
- (위원) C씨가 (주)○○○○ 주식 보유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

니까 정보수령자가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정보 제공자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면 정보제공자도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정보를 이용한 자가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정보제공자는 혐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음.

○ (위원) B씨 진술에 의하면 그전에 자금이 왔다 갔다 했고 매도하기 전에 이미 상황이 다 끝났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C씨가 신용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임. 그 신용대출 받은 금액을 (주)◇◇◇◇◇ 매수자금으로 사용했음. 그 이후에 매도한 자금을 B씨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을 했음.

○ (위원) 의견거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회계법인이 좀 더 내부적으로 회계법인 실무팀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실까지 거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회계법인 자체로도 그것이 생성이 되어야만 회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 인식 가능할 텐데, △△회계법인이 당시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혹시 조사하거나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 (보고자)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심의참고자료에 당시 △△회계법인 실무담당자인 N의 문답서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을

한 적이 있음. 그때 N 회계사의 문답시 진술에 따르면 N 회계사는 대표이사에게도 제1115호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고 회사의 처리방식이 기준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반기검토 때부터 계속 언급을 해 온 것으로 진술을 했음. 그리고 N 회계사 개인적으로는 '적정' 의견을 줄 수 없다고 기말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생각을 한 것으로 저희에게 진술을 해 오고, 또 원가계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있음.

- (위원) 3월14일 공문 이후 회사의 문서 수·발신 내역을 보면 새벽까지 자료를 분주하게 준비한 내용이 있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확정적으로 우리는 감사의견 거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 이후의 행위로 보기에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행위들처럼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 (보고자) 지난 5년간의 매출거래를 일시에 수익공시자료 그 당시 수입, 인력, 시간, 인건비 자료 그리고 당시에 추정원가를 단시일 내에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작성한다고 해도 당시 매출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그리고 부채를 수정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이 아님.
- (위원) C씨가 정보를 수령해서 주식을 전부를 시장가로 팔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에 2분 사이에 전량을 다 시장가로 판 행위를 보면 이 시기에 근접해서 다른 정보채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할 것 같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없는지?

- (보고자)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음.
- (위원) 3월14일 공문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서 미공개정보가 생성되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함. 그래서 당시에 공문이 최종통보 성격이었느냐 아니면 감사인의 전략적인 협박 성격이었느냐는 것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일 것 같음.
- (참여자) B씨는 그때 당시에 본인의 회계사로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보면 그것을 의례적으로 보내는 수준의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보통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문을 많이 보냈는지?
- (보고자) 외부감사인이 해당 회사에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라고 감사 막바지에 공문을 보낸 것은 아주 특이한 사례인 것이고, 이것은 사실 회사에 굉장히 심각한 사항임.
- (참여자) B씨가 그때 당시에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C씨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B씨가 자문을 구했던 다른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안 되어 있는지?
- (보고자) B씨가 다른 회계사 3명한테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는데, 다른 회계사들도 이러한 회계처리 기준 위

반으로 의견거절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어봤다는 B의 진술이 있었음.

○ (참여자) 그 사람들의 진술로도 그때 당시에 B씨가 의견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부분의 진술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의견거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자문과정에서 상호 간에 논의한 것으로 보임.

○ (참여자) 참고인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진술하였는지?

- (보고자) 상호 간에 회계처리 위반뿐만 아니라 회계처리 위반 사유에 대해서도 자문을 했고, 또 이러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것과 관련해서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한 문답 내용이 있음.

- (보고자) 제출해 드린 심의참고자료에 B 문답서의 내용이 들어 있음. 그 내용을 보면 B는 O 회계사, C 회계사, L 회계사에게 문의를 했고 C 회계사는 B 자신의 의견이 맞을 것 같다고 하였고, O 회계사는 "그것으로 어떻게 의견이 안 나오느냐? 잘 달래봐라."고 대답을 하였고, "L 회계사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었다."고 B는 진술을 하였음.

- (보고자) 2018년 중간감사, 반기 검토시부터 수차례 공문으로 지적이 있어 왔으며, 3월14일에 최종적으로 부정행위 가능성

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원인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임.

○ (위원장)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요청자료를 다시 한 번 금감원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